

일본의 농식품안전관리 현황*

한 재 환

1. 농식품 안전 관련 주요변화

일본정부는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체계로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편논의를 전개하였다.

일본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 E.coli O157:H7 식중독, 유키지루시유업의 가공유 오염, 2001년의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식품허위표시 등 연이은 농식품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일본정부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이원화된 농식품 안전체계로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성·신속성·통일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편논의를 전개하였다. 농식품 안전체계 개편 방향은 위험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을 갖는 신설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2003년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식품안전기관이 다원화 시스템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할 위험관리와는 별도로 농식품의 안전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농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관련부처에 농식품 안전업무에 대한 권고기능을 보유하며, 위험정보 수집·교환 기능을 담당한다.

일본의 소비자정책은 내각부 국민생활국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농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재환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jhhan@krei.re.kr, 02-3299-4352).

관련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내각부는 정책의 집행권한이 없어 소비자 안전관리에 허점이 존재하였다. 최근에 농식품의 허위표시, 수입식품에서 농약·멜라민 검출 등 농식품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은 소비자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에 2008년 4월 후쿠다 총리는 소비자행정을 총괄하는 ‘소비자청’ 설립을 제안하여 2009년 9월에 내각부 소속으로 발족하였다. 소비자청 운영은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 외에도 소비자 안전관리의 틈새행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농식품 표시에 관한 일원적인 법률 제정 등 법체계에 관하여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농식품표시 관계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용개선 등 문제점을 파악·검토하기 위하여 소비자청에 ‘식품표시에 관한 일원적인 법체계를 갖춘 위킹팀’을 설치하였다.

2. 농식품 안전 관련법령

2003년에 시행된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 이념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명기함으로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대, 시험연구 체제 정비, 국내외의 정보수집·정리·활용,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 농식품에 관한 교육·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등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와 위험정보 교환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내각부 소관으로 상위법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식품 안전관련 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 관장하는 법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검사법”,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비료단속법”, “식물방역법”,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약사법(동물용의약품관계)”,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 “특정농산가공 경영개선임시조치법”, “소의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는 법은 “식품위생법”, “식조처리법”, “도축장법”, “건강증진법”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으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신설하였다.

농식품 안전관련 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표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후 주요 안전관련 법 개정 신설

부처	법 내용
농림수산성	· 비료단속법 - 농업생산력의 유지 증진에 ‘국민의 건강보호’를 추가 - 사용방법의 준수를 의무화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료의 판매·사용·금지 회수명령을 명시
	· 농약단속법 - 회수명령 기능을 신설
	· 사료안전법(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 특정사료 등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비료의 수입·제조·판매·사용금지를 명시 - 사료의 검정기관 지정제도 재검토 조항이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 미생물의 침입방지, 미생물 억제 등 가축사양과 관련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방역매뉴얼을 작성
	· 약사법(동물용 의약품) - 개인이 무허가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제조하는 행위를 금지 - 미승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금지 조항이 추가 - 식용동물에 대한 사용규제 범위를 확대
	· JAS법 - 식품의 부정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정비 - 감시체제 강화
	· 우육추적가능법(신설) - 생산에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로 전달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식육관련 기계류의 리스제도 도입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 - 법의 목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식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 전반적으로 법의 개정은 규격과 기준을 재검토하고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음식에서 기인하는 사고대책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짐 - 규격과 기준의 재검토에서 잔류규제(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를 강화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기존 첨가물의 사용 금지 - 특수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잠정적인 유통금지 조치 등이 포함 - 감시체제의 강화에서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수입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규정 신설 - HACCP(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의 갱신제 도입
	· 건강증진법 - 허위·과대 광고나 표시를 금지하고 감시·검사 체제를 강화

자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3. 일본의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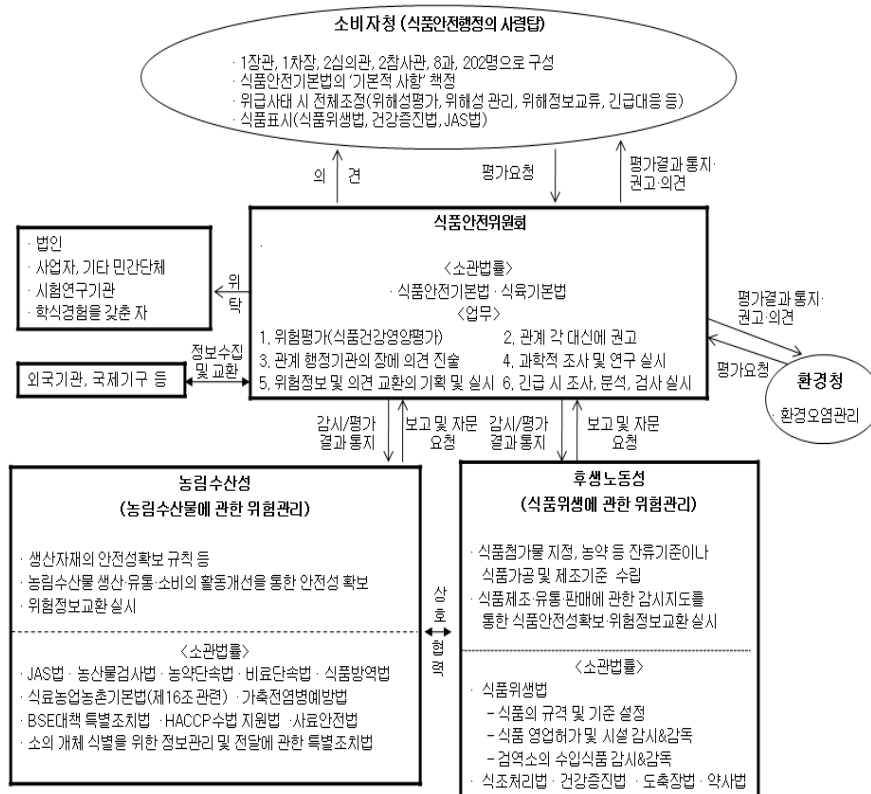
1) 조직 및 구성

농식품 안전정책 관련 주요 기관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그리고 소비자청이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총괄·수행하며, 위험관리에 있어 정책조정과 역할부여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기준과 규격설정

농식품 안전정책 관련 주요 기관은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소비자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소비자청은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식품안전사고 위급사태 시에는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청은 환경오염관리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 일본의 농식품안전 관련 행정체계¹⁾



자료: 식품안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은 농축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전(위험)관리를 담당한다. 후생노동성은 수입,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안전(위험)관리를 수행하는 등 2개 부처가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수립을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관련 지도·단속을 위해 생산과 수입단계를 제외한 가공·유통·소비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1) 2009년 소비자청이 신설되기 전에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농식품안전관련 컨트롤 타워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소비자청이 설립된 후 식품안전위원회는 주로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조정됨.

표 2 취급단계별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체계

구분	생산 (재배·사육·양식 등)	수입	국내 가공	유통 (보관·운반 등)	소비 (백화점, 식당 등 종판매점)
정책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지도·단속	농림수산성/ 지방자치단체	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적인 기반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전의 일본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농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는 서로 상반 관계에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에서 출하 전 단계는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고 식품위생행정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농식품 위험분석 기능에서 위험분석과 위험관리 기능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와 2부처간 농식품 위험에 관한 정보교류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다.

“식품안전기본법”시행은 농식품 안전에 있어서 위험을 전제로 한 위험분석이라는 새로운 수법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된 평가기관으로 과학적인 기반위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표 3 일본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 조직구성

구분	식품안전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위험관리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가공·유통관리)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도축·가공·판매)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가공·유통관리)
위험평가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2) 주요 제도 및 정책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업생산공정관리)제도

일본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 대응차원에서, 농업단체와 농식품 소매업계는 자사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GAP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

었다. 2005년에 도입된 일본의 GAP 인증제도는 JGAP, 농림수산물, 도도부현(都道府縣), 유통업체, 생협 등 5개 관리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농가는 5개 관리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07년 8월 일본 GAP와 EurepGAP는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AMCL(Approved Modified CheckList) approach²⁾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GAP는 국내용과 수출용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기초 GAP, ② Global GAP와 동등성을 가진 JGAP)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세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도도부현에서 추진하는 기초 GAP 기준 적용을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노지야채, 쌀, 보리, 과수, 화훼 등에 대해서는 기초 GAP 생산자용·산지용 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농가에 토양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GAP제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가들에게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Global GAP와 동등성 인증을 취득한 JGAP를 도입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내농업생산 규범으로써 GAP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서는 GAP협회가 발급한다. 인증심사 범위는 종묘·토양·물의 안전성, 농약·비료, 수확, 농산물의 취급시설 등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대상으로 한다. GAP인증은 <그림 2>에 제시되었듯이, 국제인증기관이나 민간인증기관인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³⁾이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이 별도로 취하는 조치는 없으며, 해마다 실시하는 재인증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용 GAP는 Global GAP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수출증대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GAP는 국내용 GAP와 EurepGAP인증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동일한 마크를 사용할 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될 염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GAP위원회에서는 인증마크 표시 금지조건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1년까지 과일·야채·쌀·보리 등의 산지를 대상으로 농가에 연수 및 지도 등을 통해 주요산지 약 200개소에 GAP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P관리기준이 관리주체별로 다양하여 생산자·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됨에 따라 2011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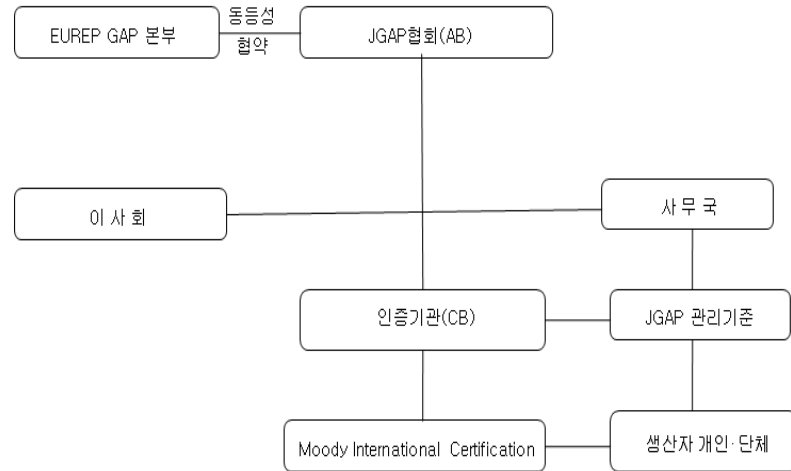
2007년 8월 일본 GAP와 EurepGAP는 농장관리기준에 한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AMCL approach 방식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 EurepGAP의 동등성 인정은 '농장관리의 기준'과 '심사·인증의 룰' 3개 요소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진행함. 그러나 AMCL approach 방식은 동등성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수단으로 EurepGAP측이 제안하여 '농장관리기준'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식임(농림수산물식품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3) Moody International Certification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국제적 규모의 인증 전문업체임. JGAP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지사에서 일본 내 모든 농산물의 GAP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5개의 GAP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JGAP협회 조직도



자료: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2008.6)”

표 4 일본의 국내용·수출용 GAP 비교

구분	국내용 GAP	수출용 GAP
농장관리기준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쌀·청과물 제2.1판	JGAP 관리점과 적합기준 청과물 제2.1판
심사/인증	JGAP의 제반규칙	General Regulation and Fruit Vegetables Version 2.1-Oct 04
동등성 인증협약	미협약	2007년 8월 협약
동등성 인정	인정하지 않음	인정함
인증서 발급	JGAP 인증서 발급	JGAP, Global GAP 인증서 발급
인증 대상	국내용 50개 품목	수출용 과일
인증마크 표시	골판지에 표시	표시하지 않음

자료: 위태석(2008).

유기인증

유기인증제도는 1999년 개정된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0년에는 ‘농림물자 규격조사회(JAS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일본 농림 규격이 제정되었다.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인증은 생산자단체의

규격 제정 요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축산물 국제기준 채택요구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유기 JAS 인정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이 대상이며,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증은 취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인정기관은 인정한 생산·행정 등 관리자가 계속하여 인정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유기 농산물이나 유기 식품의 잔류 농약 제로는 GMO 제로의 보증과는 다르다. 농림수산성 장관은 “JAS 법” 제 19조 14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판매자 등에게 표시 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시하며, 유기 JAS 마크의 부정적인 사용 등에는 벌칙이 주어진다.

유기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은 2004년 개정된 ‘특별재배 농산물’⁴⁾ 가이드 라인에 기초하여 관리된다. 유기농산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친환경농산물은 그렇지 못하다. 유기 JAS법에 의해 유기 JAS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 물·식염을 제외한 95%이상의 원재료가 유기인 가공식품은 ‘유기재배농산물’, ‘유기농산물’, ‘오가닉○○’, ‘유기○○’ 으로 표시하며,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유기 JAS 인정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 축산물 등이 대상이며 수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표 5 일본의 유기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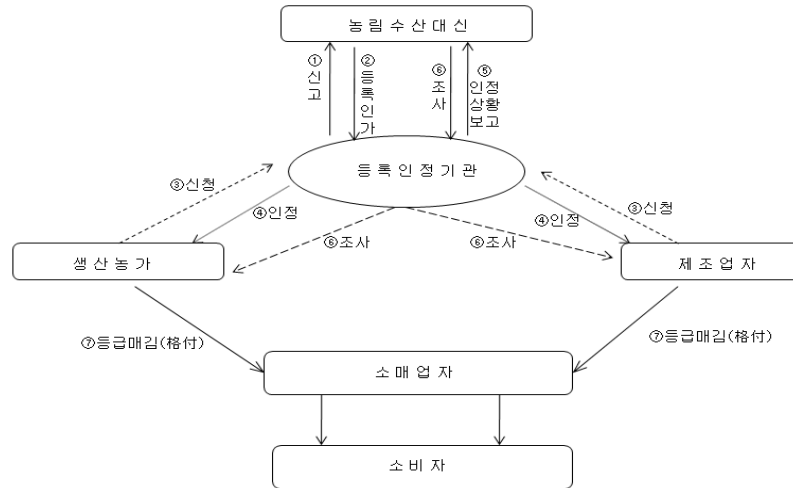
구분	내용
법적근거	JAS법(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농산물 및 가공품
담당기관	농림수산성
인정기관	농림수산성 소비기술센터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	유기, 특별재배농산물(자발적 표시)
표시사항	유기표시/ JAS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주소, 등록인증기관 명

자료: 신용광 외(2007).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정업무는 농림수산성 소속 독립행정법인인 농림수산물안전기술센터(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가 담당한다. 검사인증은 인증기관 등록, 사업자 인증, 인증사업자 조사, 인증사업자에 의한 자격부여 순으로 이루어진다. 등록인증과 인증취소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 제3자 기관이 담당한다.

4) 특별재배 농산물은 해당 농산물 재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 횟수 및 화학비료의 질소 성분량이 50% 이하여야 함.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특별재배 농산물’로 표시 가능함(신용광 외 2007).

그림 3 유기식품 검사인증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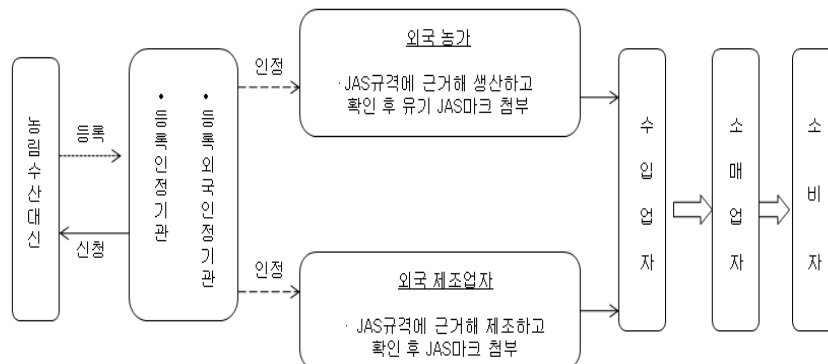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해외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해외로부터 유기식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내의 등록인정기관이나 등록 외국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이 생산·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방법이다. 즉, 유기 JAS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는 자사의 생산 및 가공공장에서 등급을 매기고 유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유기 JAS마크가 부착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여 유기식품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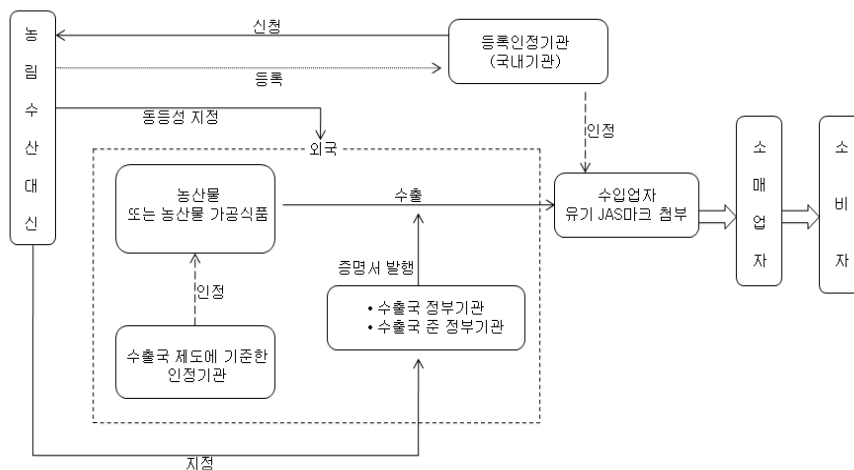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및 외국등록 인정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조업자의 유기식품인 경우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둘째,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하여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것이다(JAS법 제15조 2). 수입업자는 동등성을 인정한 수출국 제도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제품에 유기 JAS마크를 붙여 유통한다. 2007년 8월 현재 유기농산물에 관해 “JAS법” 제15조 2에 있어서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EU15개국⁵⁾,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이 있다.

그림 5 일본의 등록인정 기관에서 인정받은 수입업자의 유기식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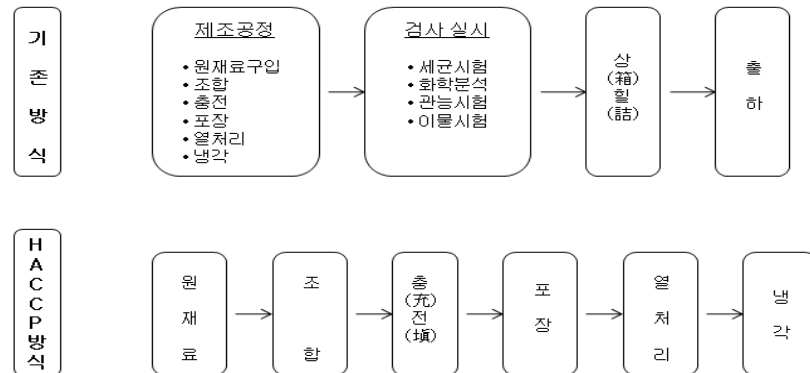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관하여”, 2007.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는 1996년 5월에 “식품 위생법”(제7조의 3)의 일부를 개정하고 '종합위생 관리제조과정(제조 또는 가공 방법 및 그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 식품 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강구된 제조, 또는 가공의 공정) 승인 제도가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농식품 안전성을 위해 제조환경의 정비나 위생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발취(拔取)검사로 (미생물의 배양 검사 등)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HACCP방식은 기존방식을 보완하여 원료의 입하에서 출하까지 모든 공정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을 정한다. 중요관리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시·기록)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책이 즉시 강구됨으로서 불량제품의 출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임.

그림 6 HACCP 공정 흐름도



자료: Japan Food Industry Center(JAFIC).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HACCP 제도의 정착,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에 일조하고 있다.

HACCP이 도입될 때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근거로 이미 제조·가공방법의 기준이 정해진 농식품에 대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조·가공방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안전하게 농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 제조·가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농식품산업에 HACCP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HACCP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HACCP 심사기관을 선정하여 기업체의 매뉴얼 개발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협회는 회원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후생노동성의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에는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은 안전성 이외에 시설 설비의 보수 관리와 위생 관리, 제품 회수 시 프로그램 등 일반적 위생 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업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체를 위한 다른 HACCP인증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림수산성 주도하에 1998년 5월 HACCP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상 우대 조치나 저리 용자를 포함한 “식품의 제조 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 조치법(HACCP 수법 지원법)”이 5년간의 시한법으로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다. 그 후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2003년 6월에 동법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HACCP 수법 지원법”에 따라 기업체의 지원금 요청에 제한은 없다. 민간단체가 HACCP 인증기관이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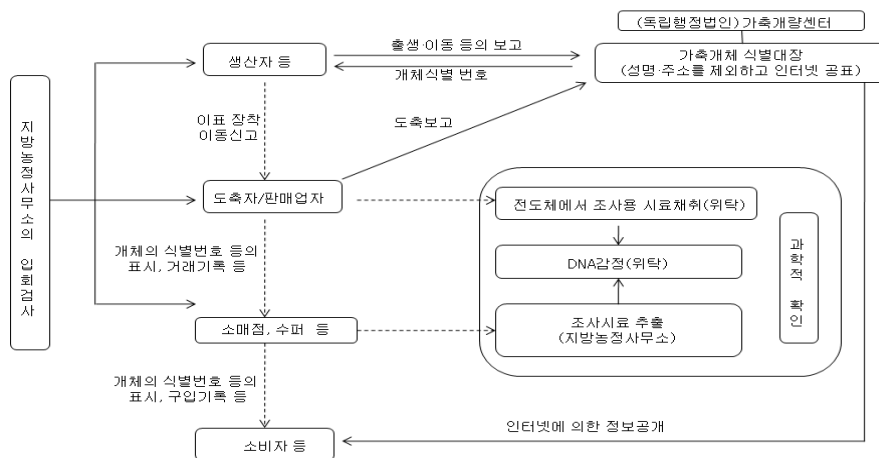
후생노동성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 농림수산성의 “HACCP수법 지원법”에 의해 HACCP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특성의 HACCP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국은 민간심사기관이 심사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면 그 매뉴얼을 기업체에 제공하여 직접 기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농식품의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소의 개체식별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광우병이 계기가 되었다. “소의 개체식별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03년 정기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화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 의무화 되었으며, 2004년 12월에는 도축이후 유통단계에서 시행되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기관은 농림수산성,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 가축개량센터(정부위탁업무수행),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개량기술연구소 등이다.

2003년 12월에 이력추적제가 의무화 되었으며, 일반농산물은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 7 일본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를 제외한 일반 농산물은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이력추적제와 비슷한 생산이력제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00년부터 ‘유비쿼터스 식품 안전·안심 시스템 확립’ 사업을 시행하여 이력추적

제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확보 사업이 전개 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특징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실증 시험을 병행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부는 이미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쇠고기를 제외한 품목은 청과물EDI협의회,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산규범기준연구회, T-Engine포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규범기준연구회는 농식품의 생산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는 휴대전화로 매장에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단계부터 포장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 안전·안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 식품추적시스템 개발과 실증시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가공식품, 야채,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이력제 도입 목적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 “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해외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08.6.

신용광·황윤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위태석.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동등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2008.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후생노동성. <http://www-bm.mhlw.go.jp/topics/yunyu/kan>

Japan Food Industry Center(JAFIC) <http://www.shokusan.or.jp>

農林水産省 消費・安全局. 有機食品の検査認証制度について, 2007.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seido_a.pdf